

'21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지침

2020. 12. 15(개정)

전라북도

[농산유통과]

목 차

I. 목적 및 추진방향	3
II. '21년 지원계획	
1. 지원신청	4
2. 지원결정	5
3. 용자지원	6
4. 사후관리	10
5. 업무처리 흐름도	11
III. 행정사항	12
IV. 참고자료 및 관련서식	
참고 1. 조례규칙 보충 설명	13
참고 2. 기금신청현황	14
붙임 1. 경영안정 사업 신청서	15
붙임 2. 구매 및 저장사업 신청서	18
붙임 3. 가공 생산 시설사업 신청서	22
붙임 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/제공 동의서	26
붙임 5. 신용조사서	27
붙임 6, 7. 시장·군수 심사 의견 및 검토의견서	28
붙임 8. 도 사업부서 검토의견서	30
붙임 9. 용자액 상환(거치)기간 연기신청서	31
붙임 10. 용자실행기간 연장신청서	32

I 목적 및 추진방향

1 목적

- 농림어업 관련 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으로 농림어업의 대내·외의 경쟁력 강화로 돈 버는 농어업 실현

2 추진 방향

- 농림수산물 가공업체 경영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- 농림수산물의 판로 확충으로 농림어업의 경영안정 도모
- 농림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으로 생산자·소비자 이익 도모
- 귀농인의 주거환경개선 및 영농자금 지원으로 안정된 농촌정착 도모
-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 농어가 경영부담 완화 등

3 추진 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42조(재산과 기금의 설치)
- 전라북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
- ※ 기금조성현황

(단위 : 천원)

2020년도말 조성액 ㉔	2021년도 기금운용계획			2020년도말 조성액 ㉕=㉔+㉖	비 고
	수입㉖	지출㉗	증감 ㉘=㉖-㉗		
32,149,518	2,494,141	1,300,000	1,194,141	33,343,659	

※ 기금 설치일 : 1993. 12. 2

II '21년 전라북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지원계획

1.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지원신청

가. 지원 대상자(조례 제 10조)

- 농어가, 작목반, 농수산물유통(가공)업자, 생산자단체, 농업법인 (영농조합법인, 농업회사법인), 귀농인

나. 대상사업(조례 제 9조)

- 농림수산물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설비(국내산 농림수산물 이용 가공) 사업
-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산지수매* 및 저장·직판사업
* 산지수매 : 농어가에서 직접 구매(1차유통)
- 거래량의 규모가 큰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이 폭락할 경우 농수산물 수매사업
- 농수산물 수출작목·친환경농산물·지역특산품 등의 생산시설사업
- 농어가 경영회생 및 농어가 경영안정 사업
- 농어촌 귀농 사업 및 FTA 대응 사업
-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림수산물 발전사업

다. 지원신청 및 지원시기

- 신청 시기 : 수시
- 신청지
 - 농업인 : 주소지(주민등록) 시·군
 - * 주소지 및 사업장 소재지가 다를 경우 사업장 소재지 시·군
 - 법인(단체) : 사업장 소재지 시·군
- 제출 서류
 - 농업인 :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붙임 1 ~ 3의 해당 사업), 개인 정보제공동의서(붙임 4), 신용조사서(붙임 5)
 - 법인(단체) : 농업인 신청서류+사업자 등록증, 법인등기부 등본

- 기타 시장·군수 및 도지사는 서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지원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
- * 시설자금 : 간이설계도,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내역서 첨부

라. 지원대상자 선정 추천 및 요청

- 시장·군수 : ① 현지확인(농업인의 농자재 구입 등 경영안정사업은 현지확인 불요) 후 ② 도 해당부서에 아래의 첨부 서류 제출
 - 의무제출 서류 :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(붙임 1 ~ 3의 해당사업), 신용조사서(붙임 5), 심사 의견서(붙임 6), 용자심의 검토서(붙임 7)
 - 보충제출 서류
 - 시설사업 : 견적서 및 간이 설계도, 사업비 산출 기초 자료 제출
- 도 사업부서 : ① 사업신청자 중 시설사업 현지확인 후 ② 도 총괄부서에 아래의 첨부서류 제출
 - 심사의견서(붙임6), 용자심의 검토서(붙임 7, 8), 지원신청 제반서류
- 시·군 및 도 해당 부서 검토사항(규칙 제7조 외 추가 항목)
 - 사업비 산출기초, 간이설계도, 견적서 등을 **종합적으로 점검하여** 사업비 신청액 적정 여부 사전검토 후 용자 대상자 추천

2. 지원결정(심의위원회)

- 개최 시기 : 월 1회정도(소집심사, 서면심사 병행)
 - * 단 신청건수가 많을 경우, 특별안건이 있을경우 추가 심의 가능
- 심의 내용 : 기금 지원대상 및 지원액 등 결정
- 위원 임기 : 2년
- 근거 :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시행규칙 제12조

3. 용자지원

가. 용자이율(규칙 제 11조) : 연 2% 농가부담

- 기금의 용자이율은 농협과 협약하여 이자율을 적용하되, 농가부담은 2%(기금 1억원 이상 출연 시·군의 신청농가는 2년간 연리 1% 적용)로 하고, 차액은 기금에서 이차보전
- 만 40세 미만 농업인의 경우 농어업 생산시설 및 경영운영 자급에 한하여 1년간 무이자로 용자(기금 1억원이상 미출연 시군은 연리 1%적용)

나. 지원 조건

- 상환완료 기간까지 기금 대상사업의 주품목중 주원료는 국내산 이어야 하며 도내산 이용 비율은 50% 이상이어야 함
 - * 단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거나 생산량이 적어 원료수급이 용이하지 않는 품목은 예외로 한다
 - ** 사업 대상자는 도내산 및 국내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해야 함
- 자금별·주체별 지원기준 및 상환기간

구 분	주 체 별	상 환 기 간
운 영 자 금	개인 1억원, 법인 3억원	2년 일시상환
수매 및 저장사업	개인 5억원, 법인 20억원	2년 일시상환
가공·생산설비사업	개인 5억원, 법인 20억원	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
경 영 회 생 사 업	개인 1억원, 법인 3억원	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

※ 가격 폭락에 따른 지원 기준(최고 50억원)

- 당해연도 이전 5년 **평년가격 대비 가격하락이 20% 이상일 경우**
 - * 평년가격은 전국 도매시장 연 평균가격을 적용하되 최저·최고년도 가격을 제외한 3개년 평균으로 산출

○ 자금 집행 방법

- 운영자금 : 선(先) 지원 후(後) 사업
단 대출 실행 후 1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해야 함. 미 완료 시 이차보전금 지급 중지
* 미집행분 이차보전금은 반납
- 구매 및 저장사업 : 계약금, 중도금, 잔금, 선지급금(외상거래 시 농가에 사전 정산자금)에 사용 가능
- 시설자금 : 기성고(추진실적)에 의거 자금 지원
- 지급계좌 : 사업 지원대상 계좌에 입금
단, 사업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원물 공급자 또는 시설업체 등에 자금을 집행해야 함
* 사업자금 용자실행은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

다. 용자 실행기간 :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 부터 90일 이내

- 90일 이내에 용자 실행과 함께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, 용자 실행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
* 대출기간(90일)내에 배정액의 일부만 대출을 실행한 경우 미 실행분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(시설사업은 최초 실행을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나머지는 지원결정일로부터 1년 내에 실행 가능)
- 용자 실행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, 대출 실행 마감일 1주일 이전에 대출기간 연장 승인요청해야 하며 대출실행기간 연장 횟수는 2회까지 가능(1회 연장은 90일 연장)

라. 용자금 조기상환 사유

- 용자금을 목적 외 사업에 사용하였을 경우
- 용자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
- 조례 등에 따른 감독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- 그 밖의 도지사 등 관리감독관청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

마. 지원 제한 사항

- 신청일 현재 진행중인 각종 보조사업(국비, 도비, 시군비)의 자부담으로 기금 용자금을 사용 불가
- 부동산 임차 또는 매입 자금은 지원 제외

바. 연속지원 여부

- 전라북도 농림수산물발기금을 지원받고 최종 상환일로부터 365일이 경과된 후 지원이 가능하나 기금을 상환한 사업자 중 가격 폭락으로 수급 조절이 필요한 경우는 연속지원 가능함.
- 2회까지만 연속지원이 가능하고, 이후는 최종 상환일로부터 365일 경과된 후 지원 가능한 경우
- 대출 실행 후 사업을 완료하고 1년 이내에 전액 상환한 경우
- 구매 및 저장·직판사업의 경우 : 상환기간 동안 매년 사업비의 100% 이상의 도내 농산물 구매실적이 있는 경우(도내산 구입 증빙서류 {구매일, 구매자(생산자) 성명, 연락처(집전화, 핸드폰), 구매지역, 구매량, 지급금액, 구매자별 구매금액 지급한 통장사본}를 제출해야 함)
- 시군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일 경우
* 지원받은 자가 업체명을 변경하거나 지원받은 업체가 대표자명을 변경하여도 최종 상환일로부터 1년간 지원 제한. 단,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완료된 업체를 인수한 제 3자(가족제외)는 1년 지원 제한 없음
-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기존 대출금 상환 후 연속 지원 가능 (「코로나19」 대책으로 한시 적용)

사. 중복지원 불가

- 시설자금을 받은 경우 시설자금 상환 후 1년까지 운영자금 지원불가
- 위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시설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필요시 운영자금 지원가능 (「코로나19」 대책으로 한시 적용)

아. 상환(거치)기간 연장

○ 용자사업자의 상환(거치)기간 연장대상

- 자연재난 : 가뭄, 홍수, 호우, 태풍, 우박, 대설 등의 자연현상으로 피해를 입어 “자연재해대책법 또는 농어업재해대책법”에 따라 피해조사와 복구지원이 확정된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으로 농(어)가 단위 피해율이 50% 이상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

* 첨부서류 : 농가별 농업재해 조사대장 사본

- 사회재난 : 화재·환경 오염·전염병 등이 발생하여 “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조(재난의 범위)에 해당되어 농축수산물(가공품 포함) 가격이 하락하여 농가소득 및 매출액이 직전 3개년 해당기간 평균보다 50%이상 감소한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, 가공업체 (소득 또는 매출액 감소 최소기간 : 6개월)

* 첨부서류 : 사회재난 발생 확인자료(정부 발표자료 등), 매출 감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(농협·도매시장 등의 출하증명 및 매출서류, 유통·가공업체의 매출액 관련서류 등)

- 가축질병 : AI, 구제역 등 법정 가축전염병으로 사육 두수의 50% 이상을 살처분한 축산농가 및 농어업법인

* 첨부서류 : 살처분명령서 또는 소객·매몰 랜더링 확인서 사본 (축산농가 총 사육두수는 시군 축산부서에서 확인)

○ 상환(거치)기간 연장 신청 기간

- 자연재난 : 정부의 복구계획이 확정 통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
- 사회재난 : 연장신청 기준이 충족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
- 가축질병 : 살처분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

○ 연장신청서 제출

- 대상 기준에 적합한 용자사업자는 붙임 제7호 서식의 “농림수산발전기금 용자액 상환(거치) 연기 신청서”를 작성하여 주소지 해당 시·군에 제출

4. 사후관리

○ 용자 사업자 관리

- 시장·군수(분야별 담당부서)는 연 2회 이상 현지 지도·점검하여 부실사업자는 도 담당부서에 보고하고 도 담당부서는 농산유통과에 통보

* 도 담당부서는 시·군 담당부서가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토록 지도

- 관리기간 : 지원대상자 선정 일부터 용자금 상환기간까지

- 확인내용 : 사업 추진상황 및 사업비 적정 사용 여부 등

* 도내 타 시·군으로 전출시 전입 시·군에서 사후관리

수매 및 저장, 직거래판매사업	대출실행 및 사업착수 시기, 원료 구매량에 따른 자금 실행 여부, 사업품목 수매지역 및 수매량, 수매액, 수매단가 등
가공·생산시설 사업	대출실행 및 사업착수 시기, 추진상황, 기성고에 따른 자금 실행 여부, 사업비 목적 외 사용 여부 등
경영안정사업	사업비 목적외 사용 여부

○ 완료보고 :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

사업별	완료 기준
수매 및 저장사업, 직거래판매사업	· 대출기간이 만료됐을때
가공·생산시설 사업	· 시설 완료 및 사업비를 집행했을 때
경영안정사업	· 대출기간이 만료됐을때

○ 용자금 회수 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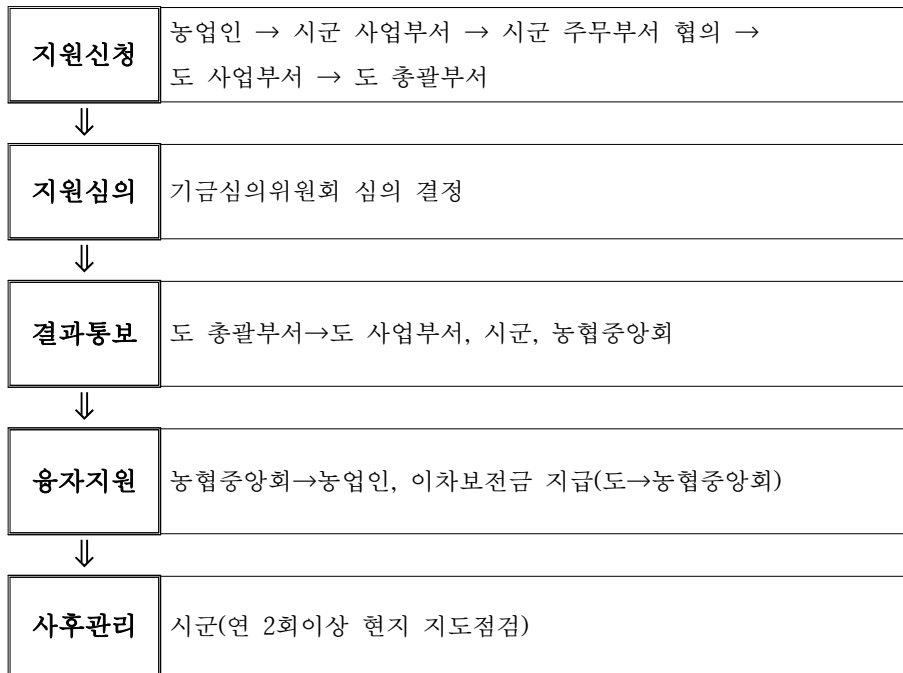
- 시장·군수는 사업목적 외 사용 등 용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용자금 대출기관에 통보하여 용자금을 회수토록 조치하고, 그 결과를 도 담당부서에 보고하고 도 담당부서는 농산유통과에 통보

○ 용자금 회수 사유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목적외 사용은 5년, 기타는 3년간 지원 불가

마. 사업별 담당부서

분 야	도	시·군
기금총괄	농산유통과	주무부서
농산물분야	농산유통과	농업담당부서
식품가공분야	농식품산업과	식품담당부서
축산분야	축산과	축산담당부서
	동물방역과	
수산분야	해양수산정책과	수산담당부서
산림분야	산림복지과	산림담당부서
귀농, FTA대응 등	분야별 사업 담당부서	담당부서

5. 업무처리 흐름



※ 시·군 주무부서는 지원 신청안내 및 지원현황 관리

Ⅲ 행정사항

1 시·군

- 시장·군수는 다음연도 기금 출연예산 반영계획을 매년 10월 10일까지 도에 제출
 - 시·군 예산에 반영된 농림수산 발전기금 출연금은 1월 20일까지 기금계좌에 지급(전북은행 525-13-0316446 통합기금출납원)
- 신청접수서류를 도 관련부서에 제출
 - 제출서식 : 지원신청서류 일체, 심의의견서, 심의검토서, 기금신청현황(참고 2)
- 완료보고서 제출 :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
- 업무처리 주의사항
 - 신청인의 전년도 각종 보조사업 지원여부 확인
 - 신청인의 용자금 미상환 또는 상환 후 1년 미경과 여부 확인

2 도 사업부서

- 시군 신청서류를 농산유통과에 제출
- 제출서식 : 시군신청서류 일체, 심사의견서, 심의검토서
- 업무처리 주의사항
 - 용자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촉박하게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

전라북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지원신청서 [경영안정사업]

전라북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운용조례 제9조의 사업을 위하여 동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을 신청합니다.

□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지원신청 내역

(단위 : 톤/천ℓ/포대 등)

사업명	세부사업내용	구입단가 (원/단위별)	사업량	사업비(백만원)		
				계	융자금	기타
합계						

첨부 : 사업계획서 1부

20 . .

신청인 : 주소 :

성명 : (날인 또는 서명)

전라북도지사 귀하

전라북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사업 계획서 [경영안정사업]

1. 사업명 : 조례 제 9조의 해당 사업명 기재
2. 사업기간 : 사업착수에서 용자 상환기간까지 기재
3. 자금활용시기 : 사업착수에서 완료기간까지 기재
4. 사업자

- 주소 : 시·군 읍·면 리·동 번지
- 회사(단체)명 : (☎ , H·P)
- 대표자 성명 : (세)
- 사업 운영기간 : 년
- 정부사업 수혜상황 : 년도, 보조 : 천원, 용자 : 천원
- 전년도 사업량 : 세부 사업의 구매량, 구매액 등 기재

5. 사업계획 총괄

(단위 : 톤/천ℓ/포대등)

사업명	세부사업내용	구입단가 (원/단위별)	사업량	사업비(백만원)		
				계	융자금	기타
합계						

[붙임 1-2]

전라북도 농수산물발전기금 완료 보고 [경영안정사업]

- 사업명 :
- 사업자 :
- 사업실적(사업 품목 모두 작성)

(단위 : 톤/천ℓ/포대 등)

세부 사업내용	사업량		사업비 집행					
	계획	실적	계획(백만원)			실적(백만원)		
			계	융자	기타	계	융자	기타

※ 거래 영수증 등 세부근거 자료 확인 후 결과만 보고(세부근거 자료는 시·군 및 업체 보관)

[붙임 2]

전라북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지원신청서 [수매 및 저장 사업]

전라북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운용조례 제9조의 사업을 위하여 동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농림수산물발전기금을 신청 합니다.

□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지원신청 내역

사업명	품목명	사업량 (톤)	사업비(백만원)		
			계	융자금	기타
합계					

첨부 : 사업계획서 1부

20 . . .

신청인 : 주소 :
 성명 : (날인 또는 서명)

전라북도지사 귀하

전라북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사업 계획서

[수매 및 저장사업]

1. 사업명 : 조례 제9조의 해당 사업명 기재

2. 사업기간 : 사업착수에서 용자 상환기간까지 기재

3. 사업자

- 주소 : 시·군 읍·면 리·동 번지
- 회사(단체)명 : (☎ , H·P)
- 대표자 성명 : (세)
- 동 사업경험 유·무 : 유(년), 무
- 유통시설 현황 : 저온저장고 선별장 등 유통시설 보유 또는 임대차 시설 기재
- 정부사업 수혜상황 : 년도, 보조 : 천원, 용자 : 천원
- 전년도 사업실적 : 사업품목 수매량, 금액 기재

4. 사업계획 총괄

(단위 : 톤, 백만원)

사업장 위 치	사업내용 (취급품목)	전년도실적		용 자 사 업 계 획				수혜농가 (참여농가)
		물량	금액	물량	사 업 비			
합 계					계	용자금	기타	

※ 수혜농가(참여농가)에는 사업 품목별 구매 농가수 기재

5. 세부 사업내용

○ 자부담 조달계획

(단위 : 백만원)

계	기확보액	미확보액	미 확보액 조달 계획		
			은행융자	사 채	기 타

○ 2년간 취급계획 및 예상수입(사업품목은 모두 작성)

(단위 : 톤, 백만원)

품 명	원료구입			관 매		연간 예상 수익		
	단 가	물량	금 액	물량	금 액	계	비 용	순수익
계 (1년차)								
계 (2년차)								

※ 원료 구입량 및 구입액은 5번 항목의 용자사업 계획 보다 같거나 많아야 함

○ 사업대상 품목 원료 조달계획(사업품목은 모두 작성)

품명	구매지역	구매 계획		
		단가(원/kg)	구매량(톤)	구매액(천원)
계	구매지역 리단위까지 기재			

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완료 보고

[수매 및 저장사업]

- 사업명 :
- 사업자 :
- 사업실적(사업 품목 모두 작성)

(단위 : 천원, 톤)

품목명	원료구매지역		계 획					실 적				
	계획	실구입처	단가 (원/kg)	사업량 (톤)	사업비(백만원)			단가 (원/kg)	사업량 (톤)	사업비(백만원)		
					계	융자	기타			계	융자	기타
	군단위까지 기재	군단위까지 기재										

※ 거래 영수증 등 세부근거 자료 확인 후 결과만 보고(세부근거 자료는 시·군 및 업체 보관)

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신청서

[가공·생산 시설사업]

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운용조례 제9조의 사업을 위하여 동 조례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신청 합니다.

□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신청 내역

사업명	세부사업내용	사업량	사업비(백만원)		
			계	융자금	기타
합 계					

첨 부 : 사업계획서 1부

20 . . .

신청인 : 주소 :
 성명 : (날인 또는 서명)

전라북도지사 귀하

전라북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사업 계획서

[가공·생산 시설사업]

1. 사업명 : 조례 제 9조의 해당 사업명 기재
2. 사업기간 : 사업착수에서 용자 상환기간까지 기재
3. 사업자
 - 주소 : 시·군 읍·면 리·동 번지
 - 회사(단체)명 : (☎ , H·P)
 - 대표자 성명 : (세)
 - 동 사업경험 유·무 : 유(년), 무
 - 정부사업 수혜상황 : 년도, 보조 : 천원, 용자 : 천원

4. 사업계획 총괄

사업명	세부사업내용	사업량	사업비(백만원)		
			계	용자금	기타
합계					

5. 세부 사업내용

- 사업 품목 : 사업완료 후 생산품목 기재
- 수매 및 가공 사업 등 원료 조달 계획(농업 생산시설 사업은 작성 제외)

품목명	원료 구매지역	원료구매 계획		
		단가(원/kg)	구매량(톤)	구매액(천원)
계				
	구매지역 리단위까지 기재			

※ 원료 조달계획에는 사업 대상 품목 모두 작성

신 용 조 사 서

1. 신청자 인적사항 및 신청내용 (년 월 일 기준)

주 소					전화번호	()
생산자단체등 회사.기타명칭	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	대표자 (성명)		
신청사업명						
소요사업비	총액	백만원	대 출	백만원	자 담	백만원

2. 종합거래 신용상태

과거 1년간 연체사실			부도 또는 대위변제사실		신용상태		
유	무	연체금액 (조사기준일현재)	유	무	양호	보통	불량

3. 대출가능액(신규 대출가능액만 기재)

대출구분	담보종류	수량	대출가능액	담보물소재지	소유자(관계)
신 용			백만원		
신용보증					
後取담보					
先取담보					

※ 先取 및 後取담보대출의 대출가능액(담보여력)은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“대출신청자료에” 의함

4. 종합의견

()년 월 일
()시·군지부장 (인)

전라북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심 사 의 견 서(현지조사서)

□ 업체현황

- 업체명 : (대표 :)
- 주 소 :
- 사업품목 :

□ 사업계획

- 사업명 :
- 사업기간 :
- 사업내용 :
- 융자금 신청액

세부사업명	사업량	사업비(천원)			
		계	지원신청액	기타	비고

□ 검토의견

- 기금지원 필요 사유(타당성), 지역발전 기여 여부 등 검토자 의견을 별첨 3을 참조 종합적으로 기술(200자 내외로 작성)

20 . . .

검 토 자 :

전라북도지사 귀하

전라북도 농림수산물발전기금 용자심의 검토서

□ 신청자 : (대표 :)
(소재지 :)

검토 항목	적정성 여부	검 토 결 과
1. 사업계획의 적정성		
2. 용자상환 및 자부담 능력		
3. 사업시기의 적정성		
4. 과거보조사업 지원 여부		
5. 전년도 거래 실적	X	시설사업은 작성 제외
6. 전년도 농산물 구입비율	X	도내산 %, 국내산 %, 수입산 % (수매 및 저장 사업만 작성)
종합의견	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 기여도, 사업의 필요성 및 전망성, 해당사업의 기술정도 등에 대하여 작성	

○ ○ 시장·군수(인)

시설사업 용자심의 검토서

검토자 : 00 담 당 000
확인자 : 00 주무관 000

□ 신청자 : (대표 :)
(소재지 :)

- 사업계획
- 사업명 :
 - 사업기간 :
 - 사업내용 :
 - 용자금 신청액

세부사업명	사업량	사업비(천원)			
		계	지원신청액	기타	비고

□ 검토내용

검토 항목	적정성 여부	검 토 결 과
사업시기의 적정성		
과거보조사업 지원 여부		
종합의견	지역농업인의 소득증대 기여도, 사업의 필요성 및 전망, 해당사업의 기술정도 등에 대하여 작성	

